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69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 12. 17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,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,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며 (안 제8조제3호),
-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한다(안 제8조제5호, 안 제9조).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범죄취약지역”을 “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5호 중 “침입범죄”를 “범죄”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”를 삭제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)</p> <p>3. <u>범죄취약지역</u> 도시환경디자인 사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(생 략)</p>	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방법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</u></p> <p>제9조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 시장은 <u>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</u>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서울지방검찰청, <u>서울지방경찰청</u>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)</p> <p>3. ----- <u>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</u> -----</p> <p>5. ----- <u>범죄를</u> -----</p> <p>제9조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 시장은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침입범죄”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.
5. “방범시설”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범죄취약지역”을 “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)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침입범죄”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방범시설”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</u></p>
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)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범죄취약지역</u> 도시환경디자인 사업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</u></p>

<p>5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제9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0조</u>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서울지방검찰청, <u>서울지방경찰청</u>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1조</u> (생략)</p>	<p><u>기 위한 사업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제9조</u>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 시장은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 <p><u>제11조</u>(협력체계 구축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 --.</p> <p><u>제12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
--	---